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2007. 3. 14(수)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 - 사회복지 분야 -

- 2007년 3월 14일(수) 10:00 ~ 12:00
- 기획예산처 MPB Hall (청사 별관 2층)

###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사회복지 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 로 그 램

---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 12:00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사    회    :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토    론    :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종만 (전북대학교 교수)

                 서재익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유한욱 (KDI 연구위원)

                 하    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 목 차

## 토론주제 :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I. 문제제기 .....	1
II.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	5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5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	6
3. 중앙정부제공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	10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	23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	27
III.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	30
1.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	30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	31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	33
IV. 결 론 .....	34
참고문헌 .....	35
사회복지·보건 분야 작업반원 .....	36

# 토론주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 I. 문제제기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현과 사회투자의 중요성 부각
  -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구경제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급속한 기술진전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양산
    -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 노령건강, 노인케어문제
    -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의 저생산성, 장기실업문제
    - 비정규 노동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저임금, 소득양극화 문제 등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투자정책
    - 사회투자정책이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자기개발의 기회를 보장하여 누구든지 일을 통해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통합,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
    - 사회투자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주효한 수단이며, 고용·보육·보건·문화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 복지서비스 형태로 구체화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대응
  - 격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투자는 예산·기금을 합한 총지출기준으로 '97년 21.0조원에서 '05년 51.9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12.0% 증가(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 분야 작업반, 2006)
- 1997~2004년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8.5%로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보다 빠르게 증가

〈표 1〉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97년	'00년	'02년	'03년	'04년	'05년	연평균 증가율
□ 사회복지·보건 분야	210,001	352,112	379,428	416,588	440,758	518,604	12.0
- 예산	52,942	84,209	120,185	136,022	148,191	156,892	14.8
- 기 금	158,059	267,903	259,243	280,566	292,567	361,712	10.9
○ 기초생활보장	9,624	24,710	34,303	35,402	39,283	46,261	21.7
○ 취약계층지원 등 <sup>1)</sup>	4,349	6,210	9,400	10,508	12,940	11,940	13.5
○ 공적연금	78,279	104,535	110,170	123,323	137,991	160,796	9.4
○ 보육·가족 및 여성	1,337	1,466	2,461	3,606	4,625	7,094	23.2
○ 국가보훈	11,885	13,881	18,572	22,258	23,721	25,116	9.8
○ 노 동	29,174	48,913	57,690	62,692	65,262	82,122	13.8
○ 주 택	58,816	129,849	107,378	113,443	109,899	134,994	10.9
○ 보건의료	5,834	5,011	7,697	8,514	9,195	9,905	6.8
○ 건강보험지원	10,703	17,537	31,757	36,842	37,842	40,376	18.1

주: 1) 취약계층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 + 노인·청소년 + 사회복지 일반

-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노동, 취약계층지원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짐.

□ 문제 1: 서비스 경합문제 발생

- 사회서비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분야별로 고유 기능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때로는 경쟁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시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전달체계의 비효율과 혼선을 야기한다(김미숙, 2006)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유사한 기능의 사회서비스를 복수의 중앙부처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낭비, 일선기관의 업무혼선 등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문제 2: 여전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가 필요

- 최근의 급속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비율은 6.1%에 불과하여 20%가 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표 2〉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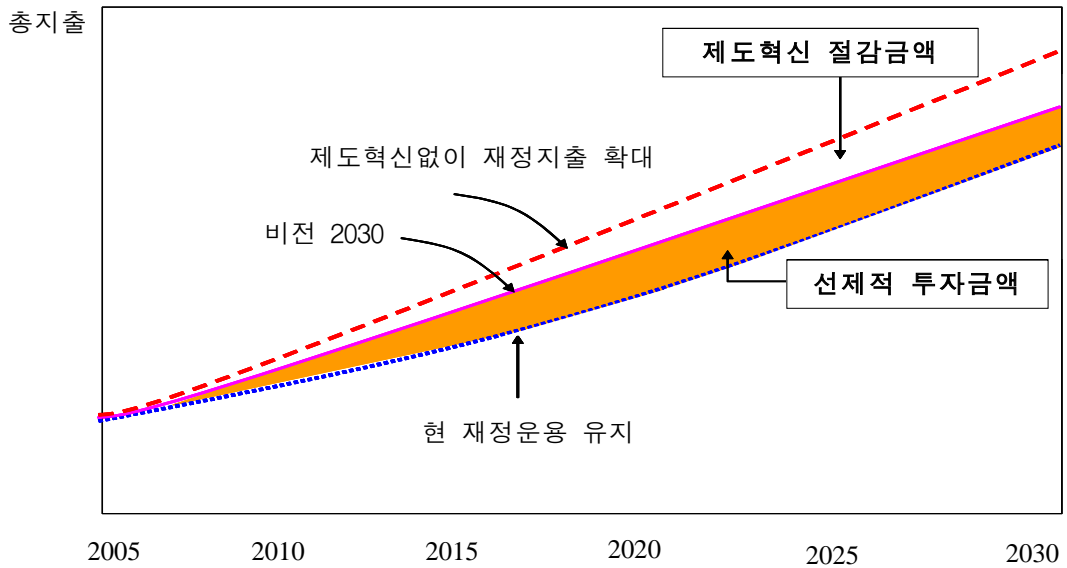
						('01년 기준,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28.5	27.4	21.8	14.8	16.9	6.1	21.2	

주: 사회복지지출 전체 비교시 : 한국 8.7%, OECD 평균 22.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계획
- 비전2030에 따르면 복지지출(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경 2001년 美·日수준, 2030년경 2001년 OECD 평균수준 도달을 목표로 선제적 투자를 강조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



자료: 비전2030

- 의욕적인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율인상 등 세입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 공급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역할의 강화 필요

-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원확대와 정책개발은 물론 정부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기능의 강화가 필요
- 사회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역할제고와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수요 충족과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간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Kahn(1973)은 “사회복지서비스란 현대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social inventions)”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그의 외적·내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 서술
- Seebohm(1968)에 의하면 대인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란 용어는 영국에서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기 시작
  - 당시 영국에서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건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보호관찰 및 사후보호서비스, 보충급여서비스, 사회보장부의 전쟁연금 수급자 복지서비스, 노동국 관련 서비스 등을 포괄
-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극적 의미의 복지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담기에 부족

□ 행자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 개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고안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복지·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행정자치부, 2006)

- 이러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법적개념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도 아니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편익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용적 개념임.
- 실용적으로 개념화된 이 정의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 중앙정부 조직은 이른바 部省조직에 해당

- Gulick(1937)에 의하면 부성조직은 목표(purpose), 절차(process), 고객 또는 취급물(clientele or material), 지역(place)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재인용, 조석준 1996)
  - 여기서 어느 하나만의 기준에 의하여 부성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질적이거나 서로 연관된 업무들을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
  - 동질성의 원리는 부성화의 기준을 명시해 주는 원리로서 각 조직단위는 같은 종류의 활동만으로 구성되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임.

- Wallace(1953)는 Gulick의 논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조직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i) 목적 또는 기능, (ii) 과정 또는 절차, (iii) 고객 또는 자재, (iv) 지역 등 네 가지를 제시
- 목적 및 고객을 기준으로 한 조직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유종해, 2000).
  - 장점으로서는 첫째, 업무의 통합적·종합적 해결에 도움이 되며 둘째, 행정조직간의 기능상 충돌이 없고 셋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넷째, 국민의 이해 및 비판이 용이함.
  - 단점은 첫째, 소수의 목적·기능으로만 행정기능을 분화시키기 어렵고 둘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기술이 무시되기 쉬우며 셋째, 할거주의적 행정이 되기 쉬워 조정이 어렵게 됨.
- 고객 또는 취급물에 의한 조직편성은 다음의 장단점을 가짐.
  - 장점은 첫째, 수익자와 조직과의 접촉, 교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둘째, 수익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며 셋째, 동일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므로 행정기술이 향상되고 넷째, 분산될 업무를 집중해서 처리하므로 업무의 조정이 용이
  - 단점은 첫째, 행정의 수익자, 자재는 다양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의 전면적인 적용이 어렵고 둘째,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며 셋째, 편성이 복잡하고 중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기관간의 권한충돌을 유발하기 쉽고 넷째, 수익자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움.
- 정부조직의 부성편성에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부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의 비판이 가해짐.
  - Etzioni(1964), 윤재풍(1985), 유종해(2000)는 부성편성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기준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혼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객관적인 하나의 기

준 외에 그 사회의 문화, 정치 및 이에 관여하는 사람의 주관에  
개입되고 있다고 주장

-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상호 경합하는 여러 기준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부성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해 Simon(1957)은 Gulick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 모호  
하며, 그 기준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그러나 Simon 역시 복수의 기준들이 경합하는 경우 어떻게 처  
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이 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제시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  
기 힘들.

□ 우리나라 중앙정부 편성 현황

- 행정각부는 2007년 1월 현재 18부 4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각부 산하에 모두 17청이 설치되어 있음.
  - 18개 부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수  
산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 18개 부서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부는 기능  
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4처를 구성하는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중  
국가보훈처 역시 보훈대상자란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  
이며, 이 밖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임.

- 중앙부서의 대부분이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 부서의 기능이 개념적·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정의되고, 그 정의된 개념에 입각하여 행정이 시행된다면 중앙행정기관간 서비스 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게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서비스를 경합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생겨남.
  - 첫째, 기능중심으로 편제된 중앙부서조직에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는 부서가 겹쳐서 편성되는 경우
    - \* 즉, 특정 수익자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겨난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기능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대상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일정 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존재
  - 둘째, 기능중심으로 편제된 각 중앙행정부서 내에 대상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행정단위가 생겨나는 경우에도 행정서비스가 경합될 가능성이 발생
    - \* 예컨대 실업자 전반에 대해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과 여성실업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 여성고용팀은 동일한 여성에 대해 유사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경합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행정개념의 변화로 기존에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다루던 업무가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되는 경우 기존 행정기관간에 서비스 경합이 발생
    - \* 예컨대 복지 분야 중 공공부조가 종전의 현금지급 중심의 소극적 개념에서 근로와 연계지어 현금이 지급되는 「근로연계복지」로 개념이 전환하면서 「복지 + 노동」의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분야에서 경합

###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 가. 방과후 서비스

〈표 II-1〉 방과후 서비스 관련 단위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대 상
지역아동센터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저소득층 미취학, 초중고
수능공부방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저소득층 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기획팀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가청소년위원회 활동문화팀	일반청소년 초4-6년, 중1-2년
청소년 공부방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저소득 중·고생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 사업목적: 저소득 빈곤아동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서울(국비 20%, 시·도비 80%), 기타(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아동복지팀) → 시도(아동복지담당팀) → 시군구(사회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일반아동, 단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비용을 보조
-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지원

□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 사업목적: 저소득계층 학생의 EBS수능방송 시청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서울(국비20%, 시·도비 80%), 기타(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아동복지팀) → 시도(아동복지담당팀) → 시군구(사회복지과) → 수능공부방
- 지원대상: 저소득층 고등학생
- 지원내용: 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운영

-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방과후학교기획팀
- 사업목적: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여 사교육비 경감
-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 보조율: 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학교기획팀) → 시·도 교육청 → 학교
- 지원대상: 일반학생
- 지원내용: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초등보육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권(바우처) 지급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소관부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활동문화팀
- 사업목적: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결식 및 학습부진 해소하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 도모
- 회계구분: 청소년육성기금
- 보조율: 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활동문화팀) → 시·도(체육청소년과) → 시·군·구(청소년담당과) → 청소년시설(수련관 등)
- 지원대상: 청소년(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 지원내용: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주말체험프로그램, 급식지원, 안전귀가

□ 청소년 공부방

- 소관부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 사업목적: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제공 및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임.
- 회계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보조율: 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복지지원팀) → 시·도(청소년담당과) → 시·군·구(청소년담당과) → 읍면동(청소년담당) → 청소년공부방
- 지원대상: 저소득지역의 청소년
- 지원내용: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냉·난방비,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

## 나. 재가보호

〈표 II-2〉 재가보호 관련 단위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대 상
가사간병도우미	보건복지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 노인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중증(1급)장애인
노인건강프로그램 지원(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보건복지부	농어촌거주 및 거동불편노인
장애가정아동양육지원	여성가족부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

### □ 가사간병도우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
- 회계구분: 복권기금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근로연계복지팀) → 시·도(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 자활후견기관 등
- 지원대상: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 지원내용: 무료가사·간병지원서비스 지원, 간병인력 양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
- 사업목적: 차상위 중증 노인의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서울 50, 기타 70, 신활력지역(70개) 80), 시·도비(서울 50, 기타 30, 신활력지역(70개) 2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기획팀) → 시·군·구(노인복지담당) → 노인돌보미 수행기관
-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재가노인
- 지원내용: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 사업목적: 재가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증대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서울(국비 50, 시·도비 50), 기타(국비 70-80, 시·도비 30-2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재활지원팀) → 시·도(장애인복지담당과) → 시·군·구 → 중계기관(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최종중장애인(1급)
- 지원내용: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 노인건강프로그램지원(찾아가는 이동복지관)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격차해소 및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 회계구분: 국민건강증진기금
- 보조율: 국비 50%, 시·도비 5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시·도(노인복지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읍·면·동
- 지원대상: 농어촌거주 및 거동불편노인
- 지원내용: 이동목욕서비스

□ 장애아 가정 아동양육지원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 사업목적: 장애아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및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회계구분: 복권기금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여성가족부(가족정책팀) → 시도, 시군구 → 위탁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원대상: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의 저소득층 가구
- 지원내용: 돌봄도우미 무료과건, 가족참여휴식 프로그램 운영

## 다. 일자리지원사업

〈표 II-3〉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구직자
노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일반여성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소관부처: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회서비스를 확대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노동부(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 지방청(고용지원센터) → 참여기관
- 지원대상: 일반국민
- 지원내용: 공모하여 선정된 참여기관이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1인당 월 70만원('06) 및 사회보험료(지원금의 8.5%)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 사업목적: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건강증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서울(국비: 지방비 = 30: 70) 지방(국비: 지방비 = 50: 5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 시·도(사회복지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 민간단체(사업수행기관)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보수·부대경비 지원,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 사업목적: 일반 사업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마련 사업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서울(국비: 시도비 = 30: 70) 지방(국비: 시도비 = 50: 5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 시·도(사회복지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 읍·면·동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공익형>

- 지체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대도시 위주) 단속요원 등으로 활용

### <복지형>

- 시각장애인: Health helper(전국 보건소 246개소 및 노인복지관 150개소의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안마사))
- 디엔디 케어(경증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돌보기)
  - \* 요양 보호가 필요한 1~2급 중증 장애인 【발달(자폐)초·중·고등학생 대상】에 대한 등·하교 지도,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적 케어(주간보호시설 등 업무도우미) 업무 지원 일자리

### □ 가사간병도우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 시·도(사회복지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 자활후견기관등 사업실시기관
- 지원대상: 취약계층(저소득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3천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약 52천명에게 무료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가사간병교육센터(5개소)를 통해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 여성일자리창출지원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또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 지원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여성가족부→위탁기관
- 지원대상: 일반여성
-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 및 취업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 70개 과정(53개 기관, 방과후 아동지도사, 전문간병인, 생태환경해설사 등)
  -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 50개 과정(41개 대학, 관세물류전문가, 관광코디네이터, 영상컨텐츠프로듀서 등)

라. 직업훈련

〈표 II-4〉 직업훈련 관련 단위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농어민,주부,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
자활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직업적응훈련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자활대상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노동부 여성고용팀	여성가장실업자
전업주부재취업훈련 지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사회안전망 확충
- 회계구분: 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보조율: 일반회계(국비 80, 지방비 20), 농특회계(국비 100%)
- 전달체계: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 시·도(지역실업자직업훈련 담당부서) → 시·군·구(담당부서) → 훈련기관
- 지원대상: 농어민(농특), 주부,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

□ 자활직업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자활대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조속한 취업 및 자립지원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지방청(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지원대상: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는 식비, 교통비 지원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신규실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조속한 취업 지원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지방노동청 → 훈련기관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교통비, 식비 등 지원

□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전직실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조속한 취업 지원
- 회계구분: 고용보험기금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지방노동청 → 훈련기관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교통비, 식비 등 지원

□ 직업적응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 사업목적: 자활대상자의 자활성공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탈출
- 회계구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노동부(고령자고용팀) → 지방청(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지원대상: 자활대상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는 식비, 교통비, 자활수당(직업훈련과정 3단계 수료시 10만원) 지급
- \* 사업내용: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 고취,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자동차 운전능력배양

□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 소관부처: 노동부 여성고용팀
- 사업목적: 여성가장실업자 취업능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노동부(여성고용팀) → 지방청(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지원대상: 여성가장실업자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지급, 훈련 받은 여성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5~41만원 훈련수당 지원

□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지원 사업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 사업목적: 경력단절 미취업여성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회계구분: 여성발전기금
- 보조율: 국비 100%
-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 교육기관(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대상: 전업주부 등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 서비스 경합의 의미와 유형화

- 서비스 경합이란 유사한 기능의 다수 서비스가 동일 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동일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가 복수로 제공」되는 의미로서의 서비스 「중복」과는 의미가 다름
  - 서비스 경합은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중복 수급할 가능성을 의미할 뿐 실제 수급자가 둘 이상의 서비스를 중복 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 각 서비스를 기획·집행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자격요건, 급여수준 등을 구분하여 상이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일선 지방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유사·중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경합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

- 서비스 경합 현상을 서비스대상의 유사 여부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동일 여부에 따라 유형화

〈서비스 경합 유형 圖式〉

		소관부처	
		동 일	상 이
서비스 대상	동일	유형 I	유형 II
	상이	유형 III	유형 IV

□ 경합유형 I

-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동일하면서 서비스 대상도 동일한 다수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 중앙부처가 동일하지만 서비스별 담당팀은 상이한 경우가 보편적 현상
  - 예를 들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 이 경우에 해당
  - 두 사업 모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 혹은 저가로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나 각 사업을 주관하는 팀은 각각 활동문화팀(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복지지원팀(청소년 공부방)으로서 다름.
  -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읍면동(청소년공부방)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서비스 중복 제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
- \* 청소년시설 수가 많지 않아 청소년공부방과의 실제 중복 가

능성은 낮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급식지원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어 두 사업의 경합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음.

- 경합 유형 I의 경우 동일 중앙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경합이므로 부처내 자율조정이 바람직
- 수급자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중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대로 가려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실시
  - 소비자 선택권 확보 방안으로서 바우처 제도 활용가능

#### □ 경합유형 II

-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지만 서비스 대상은 동일한 다수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아동양육지원사업이 이에 해당
  - 두 사업 모두 장애가구에 대해 가사지원을 행함.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에 초점이 있고, 여성가족부 사업은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초점이 있는 점이 상이함.
  - 그러나 장애아동이 중증일 경우 두 사업은 대상이 동일해짐
  - 경합유형II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된 중앙부처에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중앙부처가 추가된데 있음
  - 경합유형 II를 해결하는 방안은 중복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기능상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부서로 통합하는 것임
  - 업무통합이 이뤄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그 이전단계에서 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중복제공을 막는 것이 필요

□ 경합유형 III

-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동일하지만 서비스 대상은 상이한 다수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예를 들면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
  - 서비스의 기능이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경합유형III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음.
  - 그러나 개념상 구분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이 실제의 경우 겹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 경합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
  - 예를 든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실직여성가장이 장기실업자이면 두 사업의 대상은 실제로 동일
    - 그 결과 일선현장에서는 어느 사업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시 될 수 있음.
  - 즉, 한 개인이 중복적인 속성을 가질 경우 서비스 경합 문제가 발생
  - 경합유형 III의 경우는 중복적 속성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다수의 서비스간에 중복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둠으로써 일선집행기관이 직면하는 중복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경합유형 IV

-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서비스 대상도 상이한 다수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다만 이들 서비스의 기능이 유사하여 경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
  - \* 「일자리」는 노동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근로연계 「복지」는 복지부가 주무부처이어서 이 경우 양자간 조정에는 세심한 고찰이 필요
- 또 다른 예는 방과후 교육 사업들이 이에 해당됨
- 경합유형 IV는 주무부처는 보편적인 대상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비해 비주무부처는 보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
-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간에 특정-보편의 관계가 성립하고, 특정한 대상이 보다 우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서비스 경합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음.
- 만약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보편적 대상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와 내용과 수준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서비스 경합은 행정력의 낭비
- 따라서 경합유형 IV의 경우는 특정-보편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됨.

##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 □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조정

- 동일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앙행정부처가 유사한 서비스를 경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경합 유형 II)는 기능중심의 중앙부처로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 경합유형 II 이 외에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조정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임.

- 경합 서비스 중 대상과 기능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중복의 예는 없기 때문

#### □ 일선 행정기관 차원의 업무조정 및 정보공유

-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상호 경합하는 경우 시군구 차원에서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종류와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개편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중 서비스연계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

- 업무조정 외에 중복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 기관간에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

- 현재 정부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민간의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

#### □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실시

-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바우처 개념을 넓게 설정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바우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07년도에 10개의 신규사업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될 예정(유한욱, 2006)

- 유아교육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등이 목시적 바우처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능력개발카

드, 문화바우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이 명시적 바우처 제도에 해당

- 2007년 도입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국가유공자취업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 제도이며, 이 밖에 방과후 학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등도 바우처 원리를 도입한 제도에 해당

○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공급자간의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즉,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전체 시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야 함.

- 따라서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 투자가 필요

○ 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

-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전제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정도에 부합하여 바우처 시행 대상과 지역적 범위를 확대

- 바우처의 구매 범위를 특정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의해 서비스 공급 종류와 공급량이 자동 조절되도록 유도

###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 정부에 의한 복지공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시장실패론 (Market failure)
  - 공공재나 가치재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의해서 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외부효과와 무임승차의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제공이 불가피
- 시장에 의한 복지공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정부실패론 (government failure)
  - 정부가 서비스를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
  - 불필요한 서비스의 확대 공급 등 낭비요인 발생
-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공공성을 결합한 복지혼합(welfare mix)과 제3섹터
  - 비영리민간을 뜻하는 제3섹터는 사적소유도 인정되지 않고, 이윤분배도 제한됨.
  - 시장실패 및 집합재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대안으로서 제3섹터가 부각됨.
  -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제3섹터에 해당
- 한국의 정부-제3섹터간 관계 유형은 기드롱(Gidron)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상호공조-대행자 모형에 속함.

- 상호공조모형: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제3섹터는 공급을 담당
  - 이중혼합모형: 정부와 제3섹터가 재정과 공급에 모두 관여
- 대행자 모형: 정부와 제3섹터간에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제3섹터에 재량권과 협상력이 없는 경우
  - 동반자 모형: 제3섹터가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

##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 낮은 단계의 역할 강화: 상호공조모형/대행자 모형 유지
  -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급을 담당하는 상호공조모형, 정부와 민간간에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대행자 모형 등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만은 제고하는 방안
  - 바우처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어느 정도 달성 가능
- 중간단계의 역할 강화: 상호공조모형/동반자 모형으로 전환
  -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급을 담당하되, 민간이 정부에 대하여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의 전문성과 다양성, 현실적합성을 제고
  - 동반자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급담당 민간기관을 선발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 요건을 최소화하고, 사업집행상의 재량권 인정의 범위를 확대
    -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을 공모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기관 중에서 대상기관을 선정, 선정된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은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

□ 높은 단계의 역할 강화: 이중혼합모형으로의 전환

- 민간부문이 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면서 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혼합모형으로의 전환은 민간역할을 최대로 강화하는 방안
  -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재원분담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재원규모가 한정됨(2006년 2,376억원).
- 이중혼합모형의 한 유형으로서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사업을 주목

□ 경기도 등 We Start 프로그램

- 빈곤의 세대간 전이로 인한 인적자본의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개념이 정립
  - 미국의 경우 3~5세 유아대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이 1965년 시작
  - 한국은 2004년 사회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50여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위스타트 운동본부 발족
- 저소득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중
  - 서울 2개소, 경기 10개소, 강원 3개소 등 총 15개 지역이 시범운영중
- 군포시의 We Start 프로그램
  - 저소득층 190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287명 대상(2006년말)
  - 지자체 예산 외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나가는 종합 복지 네트워크 구성

- 6개 분야에서 11명의 수행인력이 287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 \* 6개 분야 : 방문간호, 정신보건, 보육교사, 방과후공부방, 학교사회복지, 가구사례관리
- 5개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건소, 복지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병의원, 약사협회, 반찬회사, 목욕탕, 안경점, 학습도우미, 미술협회 등 민간인들 참여
  - \* 5개 프로그램 : 건강지킴이만들기, 행복한세상만들기, 공정한교육출발선, 지역문화만들기, 민간인참여

###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 민간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 실비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
  - 현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위스타트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바람직
  - 정부는 위스타트 프로그램과 유사한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을 '07년 예산부터 시범사업으로 1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07예산 51억원)인바 지자체의 자발적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
-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세제혜택 및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월 시행 예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법(2005.8월 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2006.3월 개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법규정비의 기본방향은 통제보다 민간의 역할 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IV. 결 론

### □ 효율성 제고와 공급량 확대의 이중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확대가 행정부서에 의해 주도될 경우 관료제의 「제국건설 속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
  - 「Great Society」건설을 기치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던 미국의 존슨 정부시절 비효율이 발생한 역사적 경험은 사회투자가 강조되고, 정부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현재의 한국 경우에도 타산지석이 됨.
  - 중앙부처간 서비스 경합에 의한 비효율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서비스 조정은 강제조정 수단보다 바우처제도 등 준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도태와 축진을 도모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역할 강화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짐.
  - 민간이 단순히 공급자 역할만을 하는 상호공조모형에서 서비스 공급은 물론 재원까지 분담하는 이중혼합모형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됨.
  -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동대상 통합서비스제공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역할 강화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2007.
-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제5전정판, 2000.
-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마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 윤재풍, 조직학개론, 박영사, 1985.
- 조석준, 「조직학개론」, 박영사, 제2증보판, 1996.
-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2단계 지역특별교육: 2006 민간 과정교육」, 2006.
- Gulick, Luther (1937).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s. In L Gulick and L. Urwick. (eds).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New York: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lombia Univ.
- Etzioni, Amitai, (1964). Moder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Gidron, Benjamin, Kramer, Ralph M., Salamon, Lester M.,(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Jossey-Bass.
- Kahn, Alfred J. (1973). Shaping the New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ster, Ruth (2003). Investing in the Citizen-Workers of the Future: Transformations in Citizenship and the State under New Labor,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7(5).
- OECD (2005). 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OECD.
- Seebom, F. (1968). Report of the Committee on Local Authority and Allied Personal Social Services, London: HMSO.
- Simon, H. A. (195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작업반

경기대학교	: 박능후
경희대학교	: 정기택
기획예산처	: 사회재정기획단장
기획예산처	: 복지재정과장
기획예산처	: 재정사업평가팀장
기획예산처	: 전략기획팀장
기획예산처	: 복지전략팀장
기획예산처	: 건설교통재정과장
보건복지부	: 재정기획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팀장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기획팀장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팀장
서울대학교	: 권순만
재정경제부	: 복지경제과장
한국개발연구원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면